



의안번호	제 2016 - 26 호
보 고 연 월 일	2016. 10. 21. (제7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05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논의 결과	1
1. 도주 · 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1
2. 통화 · 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6
3.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15
III. 향후 일정	21

【별첨】

- 정준화, “도주 · 범인은닉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 안종열, “통화 · 유가증권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1]”
- 이 용, “범인은닉, 통화 · 유가증권 범죄군”
- 정준화, “대부업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 김현아, “대부업법위반 양형기준 설정검토 Ⅰ”

I. 제10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6. 10. 11.(화) 18:00 ~ 21: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8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노수환, 안종열, 이 용, 정준화,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도주 · 범인은닉, 통화 · 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 논의 결과

1. 도주 · 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 아래 적용법조 중 주황색 음영 표시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의견일치】**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형법 제9장)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도주	§ 145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	1년 이하의 징역
집합명령위반	§ 145②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을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특수도주	§ 146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 / 폭행 또는 협박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	7년 이하의 징역
도주원조	§ 147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간수자의 도주원조	§ 148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인은닉	§ 15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증거인멸의 죄(형법 제10장)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증거인멸	§ 155①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증인은닉	§ 155②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해목적 증거인멸	§ 155③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1) 집합명령위반죄 ⇒ 제외

-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사건명 ‘집합명령위반’으로 검색한 결과 최근 10년간 위 죄명으로 선고된 판결을 찾을 수 없는 등 사건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유의미한 양형통계자료가 없어 적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움

(2) 도주죄 포함 여부 ⇒ 포함

- 도주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행위태양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특수도주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성요건 체계를 고려하면, 기본적 구성요건인 도주죄를 대상범죄로 포섭함이 타당함
- 판결문 검색 결과 최근 10년간 단일범 10건, 이종경합범 87건이 발견되었음(도주미수죄의 단일범 1건, 이종경합범 8건 포함)

(3) 도주원조죄 포함 여부 ⇒ 포함

- 제3자가 구금된 자를 탈취 또는 도주하게 하는 행위는 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는 행위에 비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을 단순 도주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주죄, 특수도주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고,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 도주원조죄만이 성립하므로,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도주죄, 특수도주죄와의 죄수관계

- 형법이 피구금자의 도주죄를 제3자의 도주원조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피구금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탈취,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도주죄만 성립하고 도주원조죄의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음¹⁾
- 도주원조의 죄는 피구금자의 도주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피구금자의 도주죄에 가공한 제3자의 행위는 도주원조죄 또는 간수자 도주원조죄만을 구성할 뿐이고 도주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음
- 다만, 도주원조죄, 간수자 도주원조죄의 객체는 피구금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체포자의 도주행위에 가공하는 행위에는 교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

나. 유형분류

- 아래와 같이 유형분류 ⇒ **【의견일치】**

1) 형법 주해 각칙(2) 제57~58면.

■ 도주·범인은닉 범죄

[설정범죄]

1.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2	특수도주			
3	도주원조			

2. 범인은닉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도피			

■ 위증·증거인멸·증인도피범죄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증인도피범죄를 추가·수정]

1. 위증

⇒ 기존 양형기준과 동일함

2. 증거인멸·증인도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등/ 증인은닉도피			
2	모해 증거인멸등/ 증인은닉도피			

(1) 특수도주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일반도주죄(1년 이하 징역)와 비교하여 특수도주죄(7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다른 범죄²⁾의 경우와 달리 현격하게 가중하고 있는

2) <형법상 일반범죄와 특수범죄의 법정형 비교>

- ❖ 특수협박(7년↓, 협박은 3년 ↓), 특수주거침입(5년↓, 주거침입은 3년↓), 특수절도(1년~10년, 절도는 6년 ↓), 특수강도(무기 또는 5년↑, 강도는 3년↑), 특수상해(1~10년, 상해는 7년↓) 특수폭행(다중위력, 위협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소유형을 분류함이 바람직

- 유사례 : ① 특수강도(다만, 상해결과의 발생, 사망결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분류된 3개의 대유형의 소유형으로 각 분류), ② 특수폭행, 특수협박

(2) 간수자의 도주원조죄(형법 §148)와 도주원조죄(형법 §147)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음

- 도주원조죄와 법정형이 상한이 10년으로 동일하고, 간수자 도주원조죄의 법정형 하한만 1년으로 제한되므로 그 가중적 구성요건인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면 될 것임

(3) 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과 범행도피를 묶어 1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법정형이 동일하고, 양형통계상 양형 분포가 공통적으로 징역 4~8월에 집중되어 있음
- 대유형에 1개의 소유형만 있는 경우가 기존 양형기준에도 상당수 있음 ⇒ 사문서 위·변조 등,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록권리침해행위, 업무방해 등

(4) 증거인멸범죄 ⇒ 위증죄의 소유형 분류와 동일하게 분류

- 구성요건 체계가 유사하고, 법정형의 징역형 범위가 동일한 점 감안
 - 위증죄(5년↓), 모해 위증죄(10년↓)
 - 증거인멸/증인은닉(5년↓),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10년↓)

한 물건 휴대, 5년↓, 폭행은 2년↓), 특수공집방·특수체포 등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는 방식

2.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 아래 적용법조 중 **주황색 음영 표시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의견일치】**

-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18장)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07	① 통화(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무기 또는 2년 ↑ 유기징역 (유기징역시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②, ③ 외국통화(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②항) 또는 외국에서(③항)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1년 ↑ 징역(②항) 10년 ↓ 징역(③항)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④ (위조,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수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8	(위조,변조)(통화,외국통화)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	5년 ↓ 징역 (또는 1,500만 원 ↓ 벌금) (징역시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 210	(위조,변조)(통화, 외국통화) 지정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 또는 외국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	2년 ↓ 징역 (또는 500만 원 ↓ 벌금)
§ 211	①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되는 통화유사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	3년 ↓ 징역 (또는 700만 원 ↓ 벌금)
	②항 통화유사물판매	전항의 물건을 판매	
§ 212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 미수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의 각 미수	
§ 213	(제207조 ①내지③항 각 죄명) (예비, 음모)	제207조 ①항 내지 ③항의 예비, 음모	5년 ↓ 징역 (다만 자수시 필요적 감면)

- 유가증권에 관한 죄(형법 제19장)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14	유가증권(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①항),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②항)	10년 ↓ 징역
§ 21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기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 216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 작성 또는 유가증권에 허위사항 기재	7년 ↓ 징역 (또는 3,000만 원 ↓ 벌금)
§ 217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제214조 내지 제216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10년 ↓ 징역
§ 218	①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위조 또는 변조	10년 ↓ 징역
	②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행사, 수입, 수출)	전항의 인지 등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 219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인지 등을 취득	3년 ↓ 징역 (또는 1,000만 원 ↓ 벌금)
§ 221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인지 등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	1년 ↓ 징역 (또는 300만 원 ↓ 벌금)
§ 222	①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할 목적으로 인지 등과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	2년 ↓ 징역 (또는 500만 원 ↓ 벌금)
	②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유사물판매	전항 기재 인지 등 유사물 판매	
§ 223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 각 죄명) 미수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의 미수범	
§ 224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①항 각 죄명) (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①항의 예비, 음모	2년 ↓ 징역

- 부정수표단속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	①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다음 각 호의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1호 - 가공인물 명의 발행/작성 2호 - 수표계약없이 발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 3호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 5년 ↓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 벌금)
	②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③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과실로 ①항, ②항 죄를 범한 경우 3년 ↓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 벌금)
§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10년 ↓ 징역 (또는 20만 원 ↓ 벌금)
§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1년 ↑ 의 유기징역 및 수표금액의 10배 ↓ 벌금 (병과형)

(1) 통화에 관한 죄

(가)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변조) ⇒ 포함

- 통화에 관한 죄의 기본범죄
-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없으나(분석자료 중 8건), 다른 범죄의 기준이 되므로 양형기준 설정 필요함

(나) 형법 제207조 제2, 3항(외국통화위·변조) ⇒ 제외

- 분석자료 중 단일범 처벌 사례가 4건³⁾ 정도 밖에 없고,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처벌 사례 많지 않음
- 국내통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유추하면 되고, 별도 양형기준 설정 실익은 없음

(다) 형법 제207조 제4항(위·변조통화 등 행사, 행사 목적 수입·수출) ⇒ 포함

- 단일범 처벌 사례는 2건에 불과. 통화위조죄(특가법 제10조 포함)와 같이 처벌된 사례는 7건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음
- 판결문검색 결과에 의하면,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음⁴⁾
- 통화위조·변조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공문서나 사문서에 관한 범죄에서 위조·변조죄와 행사죄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자체는 설정하되, 위조 등 죄와 같은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타당
- 위 (나)항의 외국통화에 대한 행사, 수·출입은 제외

(라) 형법 제208조(위조·변조통화 등 취득) ⇒ 제외

- 분석자료에 처벌 사례 없음
-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단일범으로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외국통화에 대해서만 일부 발견되고 있을 뿐,⁵⁾ 대부분

3) 분석자료에서는 특가법위반(통화위조) 제10조가 적용된 사안이다.

4)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766 판결

5)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48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10480 판결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음.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 처벌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 있음⁶⁾

-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실익은 없음

(마) 형법 제210조(위·변조통화등 지정행사) ⇒ 제외

- 분석자료에 1건 있고,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단일범으로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추가적으로 1건 발견됨⁷⁾
- 법정형이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으로,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 처벌되고 있는바, 별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바) 형법 제211조 (통화유사물) ⇒ 제외

- 분석자료 및 판결문 검색결과에서 모두 발견되지 아니하며,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2) 유가증권에 관한 죄

(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 위조·변조) ⇒ 포함

- 유가증권 범죄의 기본 범죄

(나) 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기재) ⇒ 포함

- 유가증권 위조·변조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범죄 위험성에 있어서도 차이 없음
- 위조·변조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단일범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필요함
- 공문서, 사문서에 대한 범죄에서도 자격모용 범행을 유형분류상 위조·변조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다) 형법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 제외

6)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737 판결, 2010고단2691 판결

7) 부산지방법원 97고단5595 판결

○ 분석자료에 사례 전혀 없음

(라) 형법 제217조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행사 목적 수입 · 수출) ⇒ 포함

○ 위조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면, 그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같이 의율되는 경향이 있는 위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

○ 위 (다)항에서 검토한 허위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은 제외

(마) 형법 제218조 내지 제222조 (인지 등 위조 · 변조 · 행사 등) ⇒ 제외

○ 분석자료에 사례 없고, 판결문 검색결과도 처벌 사례 거의 없음⁸⁾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가) 제2조 제1항(부정수표 발행) ⇒ 포함

○ 부수법의 고유한 범죄로,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함

(나) 제2조 제2항(수표발행 후 부도) ⇒ 포함

○ 분석자료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707건 중 564건)

(다) 제2조 제3항(과실 부정수표 발행 등) ⇒ 제외

○ 분석자료에는 1건 있고, 판결문 검색결과 2건의 단일범 처벌 사례가 추가로 발견됨⁹⁾

○ 실무상 처벌 사례가 드물고, 법정형도 '3년 ↓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 벌금'으로 낮은 편으로, 독립적인 양형기준 설정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제4조(허위신고) ⇒ 포함

○ 부수법이 최초 시행되는 과정에서 결제자금이 없이 수표를 발행한 자가 미결제에 의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사취,

8) 다만, 인지위조 등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로는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654 인지위조 등 사건이 있고, 인지 등 소인말소죄는 단일범으로 벌금형 처벌 사례들만 있음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8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824 사건 판결들로, 모두 금고형 선고(그중 2건은 집행유예). 사기죄와 경합범 기소 사례도 있음

분실 등의 허위 사유를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예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수법 2조 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도 않고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부수법 제4조가 1966년 개정법에 들어오게 되었음

- 부수법의 고유한 범죄이고, 제2조의 각 범죄보다 법정형이 한층 가중된 범죄로서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

(마) 제5조(수표 위·변조) ⇒ 포함

- 유가증권위조·변조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 특별법 규정으로 설정의 필요성 있음

나. 유형분류

- **【의견일치】** 된 부분
 - 대유형 분류
 - 대유형 **【1.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등】** 의 소유형 분류

1.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2	일반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3	수표 위조·변조			

2. 부정수표 발행 등

- **【의견불일치】** 부분
 - 대유형 **【2. 부정수표 발행 등】** 의 중·소유형 분류

2. 부정수표 발행 등

①안 ⇒ 다수의견(5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허위신고			
2	부정수표 발행 · 작성/ 수표 부도			

②안 ⇒ 소수의견(3인)

가. 허위신고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허위신고			

나. 부정수표 발행 · 작성, 수표 부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2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	10억 원 이상			

(1) 대유형 분류(의견일치)

- 통화/유가증권/수표 위조 · 변조되는 그 대상이 다를 뿐 행위태양이 동일하므로 양형인자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동일한 대유형으로 묶음
- ‘부정수표 발행 · 작성, 수표 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고유한 범죄 ⇒ 동일한 대유형으로 묶음

(2) 대유형 ‘1.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등’의 소유형 분류(의견일치)

- 국내통화 위 · 변조 등(무기, 2년 ↑), 유가증권 위 · 변조 등(10년 ↓), 수표 위 · 변조(1년 ↑) : 각 법정형이 상이하므로 권고형량의 차등이 불가피함 ⇒ 별개 소유형으로 분류함

(3) 대유형 ‘2.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의 소유형 분류(의견

불일치)

- 쟁점 : 부정수표 금액 내지 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지 여부

(가) 다수의견(5인) ⇒ 소유형 분류(×)

- 통계상 부도금액과 형기 증가의 대체적인 경향성은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임에도 중한 형이 선고되거나, 다액임에도 경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발행기간, 발행경위, 부도경위 및 회수율 등의 다른 사정도 양형에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의 특성상¹⁰⁾ ① 수표가 발행되었지만 고소 단계에서부터 제외되는 경우,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③ 재판 계속 중에 공소기각 결정¹¹⁾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공소기각 부분이 판결문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회수된 수표액 및 이를 포함한 부도 총액이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① 발행 되었다가 미지급된 전체 부도 금액, ② 기소된 부도 금액, ③ 판결 선고 당시의 부도 금액(유죄로 인정된 부도 금액) 중 어느 어느 시점의 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됨¹²⁾
- 양형이유에 회수율이 설시되는 경우도 보이나, 회수율은 전체 미

10)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1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12) 발행 되었다가 미지급된 전체 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수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다액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은 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공소 기각되어 엄밀하게는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기소된 부도 금액 및 유죄로 인정된 부도 금액의 경우 회수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다액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움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인 경우에도 23억 원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가 20억 원 상당이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084 판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그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부도금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바 '다액'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일정하지 않게 됨]

지급된 수표 중에 회수된 수표의 비율로서 회수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지급된 전체 부도 금액'을 알아야 함

(나) 소수의견(3인) ⇒ 소유형 분류(○)

- 부도금액이 커지면서 대체로 형기도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됨 ⇒ 부도금액을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소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인정됨
- 실효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액'과 같은 객관적인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액 이외의 다른 주요 양형요소는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 아래 적용법조 중 **주황색 음영 표시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의견일치】**

○ 대부업법¹³⁾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9 ①	제1호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병과가능)
	제2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제4호	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제5호	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 19 ②	제1호	제5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병과가능)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제2호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호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제4호	제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제5호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제7호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제8호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호	제11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제10호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이하 벌칙조항은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어 2016. 7. 25.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을 기준으로 한다.

○ 채권추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5 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 15 ②	제1호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제2호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¹⁴⁾	
	제3호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제4호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 15 ③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제2호	제11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 관련 특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대부업법 § 19 ① 제1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444 제22호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 제1항 또는 제360조 제1항(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11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료액이 연 10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 (취득수수료의 10%~100% 벌금 병과 가능)
		2. 수수료액이 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때	1년 이상 (취득수수료의 10%~100% 벌금 병과 가능)
대부업법 § 19 ② 제3호 관련	이자제한법 § 8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병과가능)

14) 다만, 9조 제2호 내지 7호 위반 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시킬지는 향후 추가 검토

(1) 대부업법위반죄

(가) §19 ① 제1호(미등록 대부업 등) ⇒ 포함

- 대부업자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 ⇒ 대부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항
-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고(635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72.5%를 차지), 실형 선고 사건 중 본조가 적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34건/49건으로 전체 실형 사건 중 69.3%를 차지)
- 판결문 검색시스템[기간 제한 없이 조문 내지 구성요건 키워드로 검색(1심 기준, 정식재판청구 사건 제외), 검색방법은 이하 같다]에 의하면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 66건이 검색됨

(나) §19 ① 제2호(기망에 의한 등록 등) ⇒ 제외

-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조가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사건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지 않고, 유의미한 양형통계자료도 없어 적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도 어려움

(다) §19 ① 제3호(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금지 등 위반) ⇒ 제외

-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조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3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0.3%를 차지), 위 3건 모두 독립적인 단일범이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 등과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리
- 미등록 대부업 행위의 예비 내지 준비행위에 불과하거나 경합범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이 강함

(라) §19 ① 제4호(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로도 포섭이 가능

○ 대부업체의 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마) §19 ① 제5호(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공정거래법 제67조 제6호,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0조의 2(계열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로도 포섭이 가능

○ 대부업체의 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바) §19 ② 제1호(상호 등 사용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미등록 대부업의 예비 내지 준비행위에 불과하거나 위 죄와 경합 범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낮음

○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이 강함

(사) §19 ② 제1의2호(명의 등 대여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1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0.1%를 차지), 별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없음

(아) §19 ② 제2호(서류의 용도 외 목적 사용)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2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0.2%)

○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의 규정임

(자) §19 ② 제3호(이자율 제한 위반) ⇒ 포함

○ 국민의 경제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된 조항으로서 금융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항 중 하나임

○ 적용된 사례가 제19조 제1항 제1호 다음으로 많고(159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18.2%), 판결문 검색시스템상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37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빈도수가 적지 않음

(차) §19 ② 제4호(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업체의 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카) §19 ② 제5호(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금지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업체의 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민 피해와 무관

(타) §19 ② 제6호(제한 중개수수료 위반) ⇒ 포함

○ 다만, 제11조 제1항 위반한 경우는 제외(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경우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사례도 없음)

○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미등록대부중개업자 포함)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

○ 적용된 사례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3호 다음으로 많고(48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5.5%), 판결문 검색시스템상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17건 정도로 확인되어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파) §19 ② 제7, 8, 9호(중개수수료 제한 위반) ⇒ 제외

○ 국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 각 법조가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하) §19 ② 제10호(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행정법규 위반의 성격이 강함

(2) 채권추심법위반죄

(가) §15 ①(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 포함

- 채권추심법의 가장 핵심 조항임
- 적용된 사례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6호 다음으로 많고(22건/876건으로 전체 범죄 중 2.5%),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31건으로 확인됨
- 형법상 폭행(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협박(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체포·감금(5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과 비교하더라도 법정형이 더 높아 위 각 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본조의 양형이 기준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있음

(나) §15 ② 제2호 ⇒ 포함

- 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 위반 중 어느 부분까지 설정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향후 추가 검토

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방문
3호	▪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
4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
5호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6호	▪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자에게 변제요구
7호	▪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채권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힘

(다) §15 ② 제1, 3, 4호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
-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보호법익도 상이하여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보임

(라) §15 ③ ⇒ 제외

-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낮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항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사건 수가 많지 않고, 행정법규 위반적 성격이 강하거나 특수한 분야의 어음유통과 관련된 규정으로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음

(4) 이자제한법위반 ⇒ 제외

- 법정형이 더 높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으로써 규범적 의미가 충분히 확보됨

나. 유형분류 ⇒ 추후검토

I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06차 전체회의는 2016. 11. 21. 18:30 개최하기로 함